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51

발의연월일: 2020. 9. 18.

발 의 자 : 윤미향 · 김승원 · 진성준

오영환 • 양이원영 • 황운하

유준병 • 이타희 • 이학영

유정주·이수진(비)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.

한편, 사용자가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니터링과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,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근로자에게 고 통을 주는 경우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포함하는 등 근 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현행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규정이 미흡하고, 교육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행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와 적용 대상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며, 괴롭

힘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하고, 괴롭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괴롭힘으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1조, 제76조의2, 제76조의3, 제76조의4, 제93조, 제109조 및제116조).

법률 제 호

#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"특수관계인 괴롭힘"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6조의3의 제목 중 "직장 내 괴롭힘"을 "직장 내 괴롭힘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직장 내 괴롭힘"을 "직장 내 괴롭힘 또는 특수 관계인 괴롭힘"으로, "사용자"를 "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·제3항 전단·제4항·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"직장 내 괴롭힘"을 각각 "직장 내 괴롭힘 또는 특수관계인 괴롭힘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 방법,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4(직장 내 괴롭힘등 예방 교육)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특수관계인 괴롭힘(이하 "직장 내 괴롭힘등"이라 한다)을 예방 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등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"직장 내 괴롭힘등 예방 교육"이라 한다)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등 예방 교육의 내용·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3조제11호 중 "직장 내 괴롭힘"을 "직장 내 괴롭힘, 특수관계인 괴롭힘"으로 한다.

제109조제1항 중 "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.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

다.

- 1.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제72 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
- 2. 제76조의3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
제11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제2호 중 "제91조"를 "제76조의3제5항, 제91조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- ①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적용 범위) ① (생 략)	제11조(적용 범위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	②
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	
대하여는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	제76조의2부터 제76조
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	의4까지의 규정 및 그 밖에 대
을 적용할 수 있다.	<u>통령령으로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	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
지) (생 략)	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
	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
	친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
	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
	<u>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</u>
	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	(이하 "특수관계인 괴롭힘"이라
	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76조의3( <u>직장 내 괴롭힘</u> 발생	제76조의3( <u>직장 내 괴롭힘 등</u> 발
시 조치) ① 누구든지 <u>직장 내</u>	생 시 조치) ① <u>직장</u>

<u>괴롭힘</u>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<u>사용자</u>에게 신 고할 수 있다.

-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접수하거나 <u>직장 내 괴롭</u> 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 사 기간 동안 <u>직장 내 괴롭힘</u> 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 등"이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 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 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 사 결과 <u>직장 내 괴롭힘</u>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 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

내 괴롭임 또는 극무관계인 괴
<u>롭힘</u> <u>사용자 또는</u>
고용노동부장관
②
직장 내 괴롭
힘 또는 특수관계인 괴롭힘
③
<u>직장 내 괴롭힘 또</u>
는 특수관계인 괴롭힘
4
직장 내 괴롭힘 또는 특
수관계인 괴롭힘

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<u>직장 내 괴롭힘</u>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⑥ 사용자는 <u>직장 내 괴롭힘</u>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⑤
<u>직장 내 괴롭힘 또는 특</u>
수관계인 괴롭힘
,
⑥직장 내 괴롭힘 또
는 특수관계인 괴롭힘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
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
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
신고 방법, 결과 통보 등에 필
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
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76조의4(직장 내 괴롭힘등 예 방 교육)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특수관계인 괴롭힘(이하 "직장 내 괴롭힘등"이라 한다)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등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"직장 내 괴롭힘등예방 교육"이라한다)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.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등예방 교육을 받아야한다.

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장

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~ 10. (생 략)
- 11. <u>직장 내 괴롭힘</u>의 예방 및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

12. • 13. (생략)

제109조(벌칙) ① <u>제36조</u>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 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내 괴롭힘등 예방 교육의 내용
•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 -
<u>-</u>
<u>.</u>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직장 내 괴롭힘, 특수관계
인 괴롭힘
12.・13. (현행과 같음)
제109조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의</u>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1.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
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
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
6항을 위반한 자

2. 제76조의3제8항에 따른 명령

② (생 략) 제116조(과태료) <u><신 설></u>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
  2조, 제48조, 제66조, 제74조
  제7항, <u>제91조</u>, 제93조, 제98
  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
  자
-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을 위반한 자
② (현행과 같음)
제116조(과태료) ① 제76조의2제1
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및
근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
과태료를 부과한다.
<u>②</u>
1. (현행과 같음)
2
<u>제</u> 76조의3제5항, 제 <u>91</u>
<u>조</u>
3. (현행과 같음)
③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한
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
과태료를 부과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<u>정</u>